

진주시 공고 제2026-220호

## 「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 공고

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「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30.

진 주 시 장

### 1. 사업개요

- 신청기간 : 2026. 2. 2. ~ 12. 11. (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  - 온라인 : 경남바로서비스([www.gyeongnam.go.kr/baro](http://www.gyeongnam.go.kr/baro))  
정부24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), HUG 안심전세포털([www.khug.or.kr](http://www.khug.or.kr))
  - 방 문 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- ※ HUG 보증료 할인대상(저소득, 신혼부부)은 보증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 자동 신청됨
- ※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  
(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)

○ 지원대상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

○ 지원조건

- 주소 :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
- 보험 :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 유효(신청일 기준)
- 주택 :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- 소득 : 부부합산 연소득 ① 청년\* 5천만 원, ② 청년 외 6천만 원, ③ 신혼부부\*\* 7.5천만 원 이하

\* 청년 : 19세 이상 ~ 39세 이하(신청일 기준)

\*\*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신청일 기준)

<지원 제외 대상>
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
☞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을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○ 지원내용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 원)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
\* '25.3.31.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'25.3.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
구분	지원금액
① 청년 임차인	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
② 청년 외 임차인	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40만원)
③ 신혼부부 임차인	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

## 2. 제출서류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, 열람용(X), 제출용(O)

	신청서류	발행처
①	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(신분증 지참) ※ 온라인 신청 시, 수기 작성 및 서식 첨부 불필요	시·군 홈페이지 공고란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서식 비치
②	(대리 신청 시) - 위임장 - 대리인 신분증 -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	
③	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(보증서 번호)	가입기관
④	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※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류 생략	가입기관
⑤	임대차계약서(사본)	-
⑥	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	(방문 발급 시)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(인터넷 발급 시)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
⑦	주민등록등본	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인터넷발급가능)
⑧	혼인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※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	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인터넷발급가능)
⑨	본인명의 통장(사본)	-
⑩	소득증빙서류(하단 서류 중 택 1) ▶(소득종류무관) 2025년도 '소득금액증명' (26. 7. 1. 이전은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) ※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 ▶(소득별) 원천징수 영수증, 급여명세표 등(참고1 확인) ※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*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*제출용으로 발급, 회사 발급 시 회사 직인 필요	홈택스/세무서 직장(사업장) 지급기관 등

### 3.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

- 심사기간 : 30일 이내(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)  
\*예산이 소진 또는 신청 마감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불가
- 보증효력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
- 보증료 납부 :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
- 임차보증금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
- 혼인 :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
- 주택소유 : 국토부(주택기금과)에 공문 또는 별도시스템(홈즈 등)으로 의뢰하여 신청인·배우자의 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 소유 여부 확인
- 연령 : 청년과 청년 외 구분
- 연소득 : 소득종류 및 근무연수에 따라 연소득 판단  
※ 붙임 참고사항 참조
- 제외여부 :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- 결과통지 : 카카오톡(또는 문자메세지)을 통해 개별 통지

### 4. 지원금 지급

-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
(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, 최대 40만 원)  
\* '25.3.31.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'25.3.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
구분	지원금액
① 청년 임차인	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
② 청년 외 임차인	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40만원)
③ 신혼부부 임차인	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

## 5. 이의신청

-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진주시예 제출
-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

## 6. 선정기준

-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
-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
-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불가

## 7. 기타사항
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그 외 기타사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택경관과(☎ 055-749-8941)로 문의

- 붙임 1. 지원신청서 1부  
2. 서약서 1부.  
3. 위임장 1부.  
4. 이의신청서 1부.  
5. 연소득 산정기준표 및 소득금액증명 연소득 확인 방법 1부. 끝.

# 서식1

# 보증료 지원 신청서

##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

(2쪽 중 1쪽)

처리기간	별도안내
------	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휴대전화
	주소	경남 진주시	전자우편

자격 요건	주택소유여부 <sup>1)</sup> (부부 모두)	(○, ×)	신혼부부 여부 <sup>2)</sup> (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)	(○, ×)
	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<sup>3)</sup>	(○, ×) (신규, 갱신)	보증기관 <sup>3)</sup>	
	보증가입일자 <sup>3)</sup>	. . . .	납입보증료 <sup>4)</sup> <b>(특약 제외)</b>	원
	임차보증금 (임대차계약서 상)	원	연소득 <sup>5)</sup> <b>(부부합산)</b>	원

지급계좌 <sup>6)</sup>	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비고

통지방법 [ ] 서면 [ ] 전자우편(E-mail) [ ]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[ ] 기타 ( )

### 작성방법

- 1)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소유 여부 기재  
(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)
- 2)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
- 3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
- 4)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
- 5)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
- 6)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



## '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' 서약서

'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' 과 관련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. . . .

성명

(서명)

**서식3****위임장****위 임 장**

위임하는 사람	이름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위임받는 사람	이름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전화번호
	주소	

민원내용	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[     ]	이의신청 [     ]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2026 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위임하는 사람

(서명 또는 인)

**유의사항**

-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## 서식4

## 이의신청서

## 이의신청서

처리기간		별도안내	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처분내용	[ ] 부적합 [ ] 상실 [ ] 기타			
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		년	월	일
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		년	월	일
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				
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				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1.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## 안내사항

-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, 시·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.
- 시·도지사,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군·구청장, 시·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)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-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
# 참고1

# 연소득 산정기준표 및 소득금액증명 연소득 확인 방법

## 1. 소득종류별 연간소득 확인방법

소득종류		제출 및 확인서류	연간소득 인정기준	
근로소득	1년 이상 재직자	택일	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1) 1년 소득확인 시 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2) 1년 소득확인 불가시 (소득합계 ÷ 해당월수) × 12
			급여명세표 등*	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
		최근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+ 급여명세표 등*	1년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+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	
		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	1) 1년 소득확인 시 증명원상 소득금액 2) 1년 소득확인 불가시 (소득합계 ÷ 해당월수) × 12	
		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* 또는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 + 급여명세표 등*	1년 미만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상 소득금액 +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	
	1년 미만 재직자	택일	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(소득합계 ÷ 해당월수) × 12
			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	(소득합계 ÷ 해당월수) × 12
			급여명세표 등*	(급여명세표 합계액 ÷ 해당월수) × 12
	복직자	급여명세표 등*	복직이후 월 평균급여(급여명세표 합계액 ÷ 해당월수) × 12	
	사업소득	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		증명원상 소득금액
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(세무사확인분)		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		
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연말정산용만 인정)		영수증상 소득금액		

소득종류		제출 및 확인서류	연간소득 인정기준
연금소득	1년 이상 수령자	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,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**(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경우 포함)	최근 1년간 수령액의 합계
	1년 미만 수령자		(연금수령합계액÷해당월수)×12
기타소득		소득금액증명원	증명원상 소득금액

\* 임금대장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

\*\* 통장분실 등 입금통장 사본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확인

## 2. 연소득 산정방법(부부 합산소득 산정)

가. 신청일 현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소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.

(다만, 여러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)

나. 근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.

다. 근로·사업소득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근로소득인 경우 12개월 미만의 소득은 연환산 한다. (사업소득은 연환산 불가, 前 직장의 소득은 불인정)

라.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하거나 연봉(근로)계약서 상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다.

ex) 소득발생기간이 9.15~9.30인 경우,

$$\text{소득인정금액} = \text{소득발생금액} / 16\text{일} \times 30 \times 12\text{개월}$$

마.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,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하며,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한다.

바.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(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)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한다. 다만,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 환산 가능하다.

사. 근로·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

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.

- 아. 휴직자가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한다.
- 자. 소득을 입증하였으나, 신청일 현재 퇴직(또는 폐업)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또는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차. 건강보험자격이 직장가입자(임의계속 가입자를 포함)의 피부양자인 경우 무소득자로 추정한다.
- 카.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\*, 기업연금, 개인연금을 포함한다.
  - \*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원연금, 국민연금(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 등) 등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(기초생활수급비, 국가유공자 보상금,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)
- 타.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 가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불가하다.
- 파.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. (국내에 없다는 객관적인 서류 징구 후 대출거래약정서 특약사항란에 "신청일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음을 확인함" 이라는 특약문구 작성)
- 하. 국세청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 → 증명발급 → 사실증명발급신청)의 '사실증명원'(신고사실없음) 제출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추정한다.

### 3.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

- 가.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다. (다만,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\*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사본으로 확인
  - \*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
- 나.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\*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으로 확인한다.
  - \*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
- 다.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.
- 라. 기타
  - 1) 연금·이자·배당·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실확인 생략
  - 2) 건강보험가입내역으로 소득종류(직장, 사업소득)를 확인하여 소득증명 서류를 징구

□ 소득금액증명 연소득 확인 방법

발급번호	소득금액증명 (년 귀속)						처리기간		
							즉시		
주소									
성명				주민등록번호					
◇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								(단위 : 원)	
구분	종합과세							분리과세	총결정세액
	이자	배당	사업	근로	연금	기타	합계		
수입금액									
소득금액									
*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* 분리과세 :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한 분리과세 소득(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)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* 총 결정세액 :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									
◇ 연말정산(지급명세서 제출) 현황								[※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]	(단위 : 원)
구분	소득 발생처		지급받은 총액	소득금액	총 결정세액	비고			
	법인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						
사업소득									
근로소득							(연말정산) (일용근로)		
연금소득									
종교인소득									
(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: . ~ . )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 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세무서장(인)									

- ▶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합니다.(소득발생기간 고려하지 않음)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하여 확인하 되,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,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. 만약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(수입금액) + 사업소득(소득금액)으로 확인합니다.